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16 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유동수・이기헌・임광현

박 정・박민규・박홍배

김남근 · 강준현 · 박상혁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·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.

그런데, 농협·수협·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.

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·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 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,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(안 제74조, 제74조의2, 제74조의3, 제83조 및 제88조).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"를 "금융위원회가 주무부장관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"제74조의3제3항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특별자치시장"을 "금융위원회, 특별자치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은"으로, "금융감독원장"을 "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자치시장"을 "금융위원회, 특별자치시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특별자치시장"을 "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로한정하며, 특별자치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공제사업을"을 "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"로 한다.

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 관 또는 금융위원회(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)는"으로 한다.

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주무부장관은"을 "주무부장관 및

금융위원회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 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경고 또는 주의
- 2.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- 3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

제83조 본문 중 "제74조의3제2항에"를 "제74조의3제3항에"로 한다.

제88조제2항 중 "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"을 "금 고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
- 2.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감독 등) ① 주무부장관,	제74조(감독 등) ①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금	
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	
구분에 따라 감독한다. 다만,	<u>.</u>
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	
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	금융위원회가 주무부장관
협의하여 감독한다.	<u>과</u>
1. 금고에 대한 감독: 주무부장	1
관. 다만, 제7조, 제12조제5항,	
제37조 및 <u>제74조의3제2항과</u>	<u>제74</u> 조의3제3항과
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	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	
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감	
독한다.	<u>.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주무부장관, 특별자치시장・	② <u>금융위원회, 특</u>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	<u>별자치시장</u>
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	
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	
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	
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	
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	

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은 금고에 한정한다.

- ③ <u>주무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 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 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 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<u>금융감독원장</u>, 예 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주무부장관, <u>특별자치시장</u>・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
③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
<u> 원장은</u>
④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
원장은
<u>관계자의 출석 및</u>
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
<u>며</u>
⑤금융위원회, 특
별자치시장

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 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 항이 위법·부당한 경우(<u>특별</u> <u>자치시장</u>·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- ⑥ (생략)
-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 회의 <u>공제사업을</u> 건전하게 육 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 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제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 전 분) ① <u>주무부장관은</u>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

1. (현행과 같음)
2
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
독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
며, 특별자치시장
⑥ (현행과 같음)
(7)
<u>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</u>
 세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
분) ① <u>주무부장관 또는 금융</u>
위원회(제74조제1항 단서에 따
른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경
<u> 우로 한정한다)는</u>

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74조의3(금고 등에 대한 행정 처분) ① <u>주무부장관은</u>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 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	1. · 2.	(현행	과 같	음)		
	② ~	(§	현행과	같음)	
제	74조의]3(금3	고 등여	에 대	한	행정
	처분)	1 2	주무부	장관	및	금융
	위원호	<u> 는</u>				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 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3호에 해당하 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 군수・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 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.
- ④ 회장은 금고가 <u>제2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<u>⑥</u> (생 략)
- 제83조(청문 등) 주무부장관 또는 저희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, 제74조의3제1항제3호, 제79조제 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

<u>1. 경고 또는 주의</u>
2.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3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
또는 일부 정지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④</u> <u>제3항에</u>
<u>.</u>
<u>⑤</u> <u>제3항</u>
<u>⑥</u>
제3항에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 세83조(청문 등)

1항제1호 · 제74조의3제1항제3 호,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 라 업무정지, 관계 임원의 해임 • 직무정지를 명하거나,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74조 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. 다만, 그 처분의 상대방 또 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8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 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 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<신 설>

제74조
의3제3항에
<u>.</u>
제88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고 또는 중앙회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<u>경우에는</u>
1.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
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

	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
	<u>니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2.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
	해ㆍ기피한 경우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